

 <p><b>거창군</b>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8px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24px; margin: 0;">제924호 2023. 8. 9.(수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고 시

- 거창군 고시 제2023-101호 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 
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 ..... 2
- 거창군 고시 제2023-102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3

## 공 고

- 거창군 공고 제2023-1216호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 ..... 4

<b>회 략</b>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  
 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# 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

“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” 기본 및 시행 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제3항,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4일

## 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북상면 월성마을 유휴시설(창고) 리모델링을 통한 농가 카페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제공,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기여
3. 사 업 비 : 450백만원(균특 225, 군 225)
4. 주요사업내용  
가. 위 치 :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545번지  
나. 세부사업 내용 : 마을창고(유휴시설) → 농가카페 리모델링
5. 사업시행자 : 거창군수
6. 사업시행기간 : 2023. 8. ~ 2024. 3.
7. 사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

구 분	위 치	지목/구조	면적	소유자	비고
토 지	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,545	창고용지	1,755㎡	북상 월성마을회	
건축물	〃	철근콘크리트조	100㎡	〃	

8.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(☎055-940-8273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8. 9.

거창군수

### 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138 등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

「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 결정한 소규모수도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일

### 거 창 군 수

1. 내 용 :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
2. 사 유 : 대체급수시설 확보(지방상수도 급수)
3. 근 거 : 「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 제11조 제1항
4. 대 상 : 거창군 가조면 도산마을 소규모수도시설 1개소

###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 내역

연번	위 치		시설명	폐지사유	폐지 후 급수대책	비 고
	읍·면·동	리				
1	가조	일부	도산	지방상수도 공급	지방상수도 급수	

끝.